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인증평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 * 과정심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37조

2021년 11월 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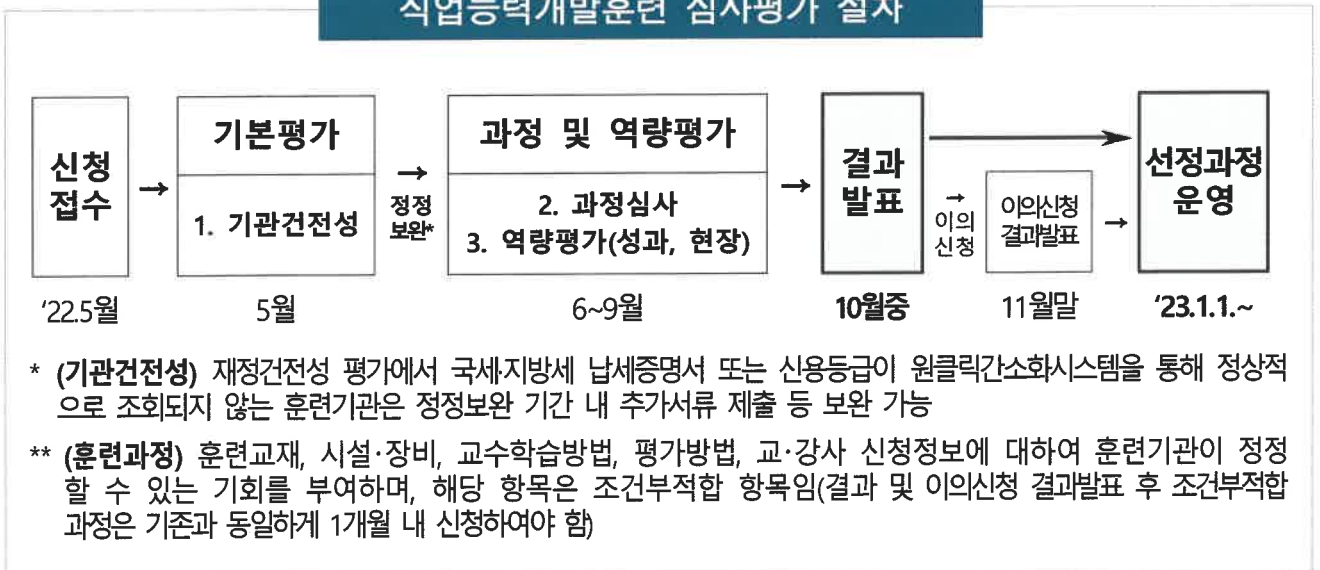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하고,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동시에 실시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자격 부여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주요 변경사항>

추진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개편	(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심사평가 절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각각 별도 진행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일괄 진행
신청·접수	(인증평가) 2월 신청·접수 (과정심사) 4월 / 10월 신청·접수	➔ 5월 일괄 신청·접수
신청 대상	① 신규 기관 ➔ (인증) 신규기관 (과정) 통합심사 ② 실적 기관 ➔ (인증) 실적기관 (과정) 통합심사 ③ 다년인증기관 ➔ (인증) 모니터링 (과정) 통합심사 ④ 공공훈련기관 ➔ (인증) 평가면제 (인증평가면제승인기관) (과정) 통합심사 ⑤ 원 격 기 관 ➔ (인증) 원격기관 (과정) 원격과정심사 ⑥ KDT, 기업맞춤형 ➔ (인증) 선택권 부여 (과정) 과정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동시 진행) * 스마트혼합훈련 포함 ➔ (인증) 기존 동일(인증평가 면제) (과정) 기존 동일(과정심사 신청) ➔ (인증) 기존 동일(원격 인증) (과정) 기존 동일(e-simsa과정심사) ➔ (인증) 기존 동일(선택권* 부여) (과정) 기존 동일(과정심사 신청) *2021년도 종료실적은 2022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반영 희망 여부 선택 가능
심사평가 기간	(기관인증) 3월 ~ 11월 (과정심사) 5월 ~ 7월/10월 ~ 12월	➔ 5월 ~ 10월
결과발표	(기관인증) 10월 발표(이의신청 11월) (과정심사) 7월(이의 9월)/12월(이의 2월)	➔ 결과발표 : 10월 21일 (이의신청발표 : 11월 30일)
조건부 심사	(과정심사) 8월(이의 9월)/1월(이의 3월)	➔ 11월 (이의신청 12월)

II. 신청 접수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 훈련시설 유형 중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 관련 교육만 심사 신청 가능함

- (신청대상)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3년 이상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평가>대상 훈련인 집체훈련(혼합훈련 포함) 중 실업자 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실업자계좌제), 재직자훈련(재직자계좌제, 사업주위탁훈련)

※ 단, 원격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는 별도로 진행

<훈련실적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 구분>

구분	내용
실적보유기관	· 2021.1.1. ~ 2021.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2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2023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 (이 경우, 현장평가 참여 선택 필수)
신규기관	· 2021.1.1. ~ 2021.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 ※ 단,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더라도 신규기관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분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 기관)	·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 해당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자체 평가 장치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인증 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받은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훈련과정 심사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의 통합심사 메뉴(기존)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2022년도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신규 우수훈련기관 선정 희망기관 포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유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단, 2021년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선택 불가)

<훈련유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구분>

기관유형	훈련유형	신청구분	
		인증평가	과정심사
집체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일반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신청	추후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원격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공공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 받은 기관	면제	신청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실적은 기본적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훈련의 2021년도 종료실적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 다만 평가신청기간 이후에는 선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불가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10:00 ~ 5월 11일(수) 18:00
- 2022년 3월말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사용(임시저장 및 테스트 가능, 세부일정 별도 안내) 가능
- 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전산상 동의서 체크 필수)
- 신청기간 중 접수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2022년 6월 2일(목) ~ 7일(화) 중 일부 항목* 정정·보완 기간 부여
- *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훈련시설·장비, 훈련방법(2개) 총 6개 항목 및 재정건전성 평가자료이며, 훈련과정 회수 불가(해당 항목에 대하여 변경만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평가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 2022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 ※ 현장평가 미참여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훈련기관의 자체적인 운영 점검 및 질 제고를 위해 작성 및 제출을 권고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경로>

기관유형	심사평가 신청 유형	신청 경로	
		인증평가	과정심사
집체 훈련기관	인증평가/과정심사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 심사평가(인증·과정 일원화) 경로로 신청	
	인증평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 인증평가 경로로 평가 신청	-
	과정심사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특화과정 등)	-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 통합심사 경로로 심사 신청
원격 훈련기관	인증평가/과정심사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 인증평가 경로로 평가 신청	e-simsa시스템 > 원격훈련심사 경로로 심사 신청

□ 선정방법

○ 1단계 기본평가, 2단계 과정 및 역량평가로 구분

- 기본평가*는 훈련기관의 기본적인 법규위반 여부(준법성)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적합·부적합 결정

* 1단계 기본평가 감점 사항은 정정기간(6.2~6.7) 전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

- 과정 및 역량평가는 훈련실적의 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과정적합성 및 현장역량(시설·장비, 교·강사 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물량 승인 및 배정

○ 훈련기관 인증평가 최종 등급 및 과정심사 결과는 일괄 1회 발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별 주요 적용사항>

구분		과정신청 여부			1단계	2단계(과정 및 역량평가)	
실적보유 기관	인증갱신 우수희망	훈련과정신청	○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성과, 현장)
		훈련과정신청	×	⇒		-	
	모니터링	훈련과정신청	○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성과)
		훈련과정신청	×	⇒		-	
신규기관	-	훈련과정신청	○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현장)
		훈련과정신청	×	⇒		-	
다년인증 등급 보유기관	인증갱신	훈련과정신청	○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성과, 현장)
		훈련과정신청	×	⇒		-	
	모니터링	훈련과정신청	○	⇒	기본평가	과정심사	역량평가 (성과)
		훈련과정신청	×	⇒		-	

III. 기본평가

1

기관건전성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평가

- 관련 법 규정의 준수 여부, 세금 체납이력 및 신용수준 등을 토대로 기관의 청렴성 및 재정안정성 등 20점 이상 감점 및 인증 부적합 여부 판단

<기관건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관 건전성 평가	준법성	시정명령	20점 이상 감점 여부 및 인증 부적합 여부 판단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임금체불 이력	
	최저임금 위반 이력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신용수준		
기타	사회적 물의 등 ※ 2023년부터는 최근 3년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 5점 이상 감점 발생 시에도 인증유예 예정		

1. 준법성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서면평가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2021. 1. 1. ~ 2021. 12. 31.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 감점(훈련실시 이력에 관계없이 해당 사항 발생 시 감점 적용)

* 시정지시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경우 해당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시 감점 적용

○ 제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 부정수급, 허위 과정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 또는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2021. 1. 1. ~ 2021. 12. 31.인 경우 처분수준에 따라 건당 1 ~ 20점 감점
 -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의 경우, 처분의 유효기간이 2021. 1. 1. ~ 2021. 12. 3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유예로 즉시 인증유예 부여*
- * 이 경우 인증유예 받은 시점 이후 도래하는 인증평가부터(접수마감일 기준) 등급 획득 가능
- 인증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사회적 물의, 준법성 연속 감점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등 위법행위가 있고,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예 : 훈련기관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법적 처분(예: 훈련 운영과 연관된 성희롱이나 폭행 등에 따른 형사처벌, 직업훈련 운영 관련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인증유예·부정훈련·행정처분 발생기관이 인증유예 회피를 위해 신규기관을 설립·대표자를 변경·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증유예 즉시 부여 및 보유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 최근 3년 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연속하여 발생한 기관은 기관건전성평가 부적합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예정**

* ①임금관련 법 위반 이력 및 ②제재처분 이력(지도점검 불응 과태료 부과 포함)으로 항목 구분

** 2023년도 인증평가부터 적용 예정으로, 2021년~2023년 실시된 인증평가의 1단계 준법성평가 결과 및 2023년도 평가실시 연도 처분내역을 포함하여 반영

2. 재정건전성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서면평가

○ 세금체납 여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각 10점 감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납과 동일하게 감점
- 세금 체납 여부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연계된 원클릭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기반으로 평가
- 원클릭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납세증명서 전자발급·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정기간 동안 추가로 제출하는 납세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

* 2022.3.1. ~ 2022.6.7 기간 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

○ 신용수준 평가

-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하 해당 시 감점
- 훈련기관의 신용수준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연계된 원클릭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을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조회 평가(정보제공 동의 필수)

<신용수준 평가 감점기준>

사업자 유형	감점기준
개인/법인사업자 (평가기관 전체)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D등급: 15점 감점

- 원클릭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정기간 동안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신용수준 평가 추가 제출 가능 서류 및 감점 기준 >

사업자 유형	제출 가능 서류 및 감점 기준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

* 국세청 발급 2020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별도 공지하는 추가서류제출 마감일에 유효한 기업신용보고서만 인정(심평원 선정 신용평가기관 외 타신용평가기관 발급분 제출 허용)

** 별도 공지한 추가서류제출 마감기한 내 발급받은 개인신용보고서만 인정하며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불가시 법인사업자 평가기준(자료) 적용

IV. 과정 및 역량평가

1

과정심사

1. 신청요건

- **실시가능직종(HRD-Net) 및 NCS 확인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인정취소 할 수 있음
 -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만 운영 가능
 - 신청·접수할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는 반드시 NCS확인강사로 승인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된 교·강사는 훈련을 진행할 훈련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실시
- **실업자 국기 진입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기관**
 - 우수훈련기관 또는 관련분야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
 - 실업자 국기 선정물량은 변경된 국기직종(81개)기준으로 2022년 별도 안내

[실업자 국기 진입 요건]

- ▶ (관련 대상) 아래 ① ~③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
 - ① NCS소분류별 40시간 이상 계좌제(실업자+재직자) 과정 또는 실업자 국기 직종(연계된 NCS 소분류 포함)별로 5인 이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 통합심사, 스마트혼합훈련(추가심사 포함), 일반고 특화, 중앙부처 국기훈련, 과정평가형과정 모두 해당
 - ② 2022년도 운영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스마트혼합훈련 포함)에 해당 실업자 국기직종으로 적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공고일 기준 우수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 (실적 산정 기간) 2020. 4. 1. ~ 2021. 12. 31. 내 개시 또는 종료
- ▶ (실적 산정 범위) 실업자 국기 편성가이드에 매칭된 NCS소분류*
 - * (예시) 디지털디자인 신청가능 소분류: ① 정보기술개발(200102), ② 디자인(080201)

2.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 신청가능 수

- 신규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 가능
 - 실적산정 기간 내 실적이 있는 경우 일반기관 산정기준 적용
 -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은 별도 신청한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청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신규기관 훈련유형별 과정심사 신청 가능 수>

훈련유형	신청 가능 수	총 신청
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최대 10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최대 10개	

□ 우수 및 일반기관 신청가능 수

- 훈련기관 인증등급*(일반, 우수, BHA)에 따라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 수 부여
 - 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은 별도 신청한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청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 2021년 훈련기관인증평가 최종결과(21.11.23)에 따라 등급 기준 훈련과정 신청한도 수를 산출하며, 산정 상세기준은 22년 3월 추가 안내 예정
- 조건부 인증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 가능(실업자 계좌제 최대 5개)

3. 훈련과정 편성방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

□ 공통사항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훈련기준")이 개발된 1,039개 직종은 반드시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훈련기준 확인경로[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자료실 → 훈련과정심사 → [NCS 기반 훈련기준(1,039개 직종)]

- 총 훈련시간 중 실업자 국기는 60%, 계좌제(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 위탁은 40% 이상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 기준 미충족 시 '선정제외, 훈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 단, 스마트혼합훈련의 NCS 적용 비율은 집체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격보조훈련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자훈련

- NCS '능력단위'만 사용 가능

□ 재직자훈련

- NCS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단위로도 과정 편성 가능
- '능력단위요소'로 편성한 과정은 해당 능력단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편성이 가능*하며, 편성의 적정여부는 별도 심사

* (예시) 능력단위 훈련시간이 20시간인 경우, 능력단위요소는 각 1~20시간(1시간~능력단위 훈련 시간의 100%) 범위에서 편성 가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적용과정

- 재직자훈련과정 중 단기과정(40시간 미만)과 법정직무훈련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 ※ 그 외 비적용 과정 신청 가능 여부는 설명회 자료집의 'NCS 적용 여부 가이드' 참고
- 국기직종 중 스마트팜구축 직종은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스마트혼합훈련과정

□ 과정편성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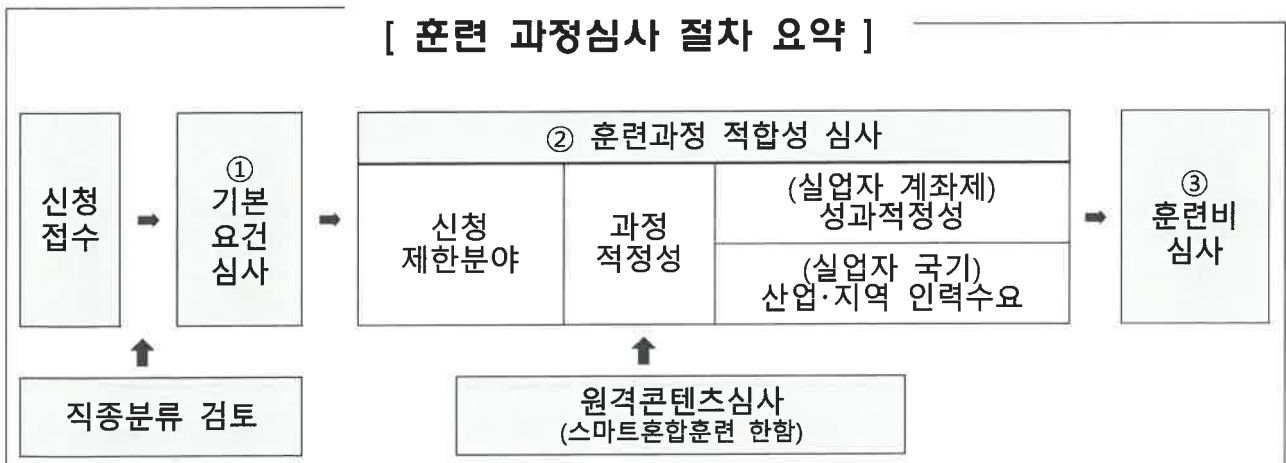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재직자 계좌제훈련 40시간 이상)으로, 전체 훈련시간의 10% 이상 ~ 50% 이하(최소 20시간)를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으로 편성한 과정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은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을 통해 원격보조훈련 및 쌍방향훈련 실시
- 쌍방향훈련만 단독 편성 불가하며, 원격보조훈련은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최소 20시간)편성

- 원격보조훈련은 반드시 전공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야 하며,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로만 편성불가
-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등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집체훈련'으로만 교육해야 하는 과정은 스마트혼합훈련으로 신청 불가
-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편성에 따른 지원 단가 등 세부사항 별도 추가 안내
- 콘텐츠의 1차시(1시간)는 재생시간 기준 25분 이상으로 구성하고 재량학습활동을 편성*
- * 1차시의 재생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 재량학습활동 제외 가능
- 25분 미만인 차시가 일부 포함된 콘텐츠는 재량학습활동을 과제형*으로 편성
- * 실습형 콘텐츠인 경우 실습형 과제, 이론콘텐츠인 경우 서술형 과제를 권장

□ 원격훈련 LMS 구축

- 과정심사 결과 발표 전까지 원격훈련이 가능한 LMS를 확보
- LMS(자체 LMS, STEP 온라인강의실 등)를 既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해당 LMS로 훈련과정을 신청
- LMS가 없는 훈련기관은 'STEP 온라인강의실(분양 일정 별도 공지 예정)'을 분양 받거나, '자체 LMS를 구축해야 하며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 LMS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정 선정 제외

4. 심사절차 및 기준



① 기본요건 심사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 신청자격, 훈련과정 편성 기본요건(스마트혼합 훈련 기본요건 포함), NCS 적용 필수 기준 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과정심사) 신청 전 지정시설 유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시 가능직종을 승인받아야 하며, 미승인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 불가

②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 신청제한분야 심사

-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 등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 심사

□ 과정적정성 심사

- 훈련내용·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의 적정성 및 우수성 심사

※ [붙임3]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과정적정성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훈련기관이 동일직종, 동일 주훈련대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경우, 과정적정성 심사 완화 적용(실업자 국기 제외)

* BHA 훈련기관우수일반훈련기관 NCS세분류 기준

※ 과정심사 완화 대상 과정 중 행정처분 이력(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일 기준 2021.1.1.~ 2021.12.31.)이 있는 직종 또는 수료인원이 없는 직종 제외

- 실적산정기간 : 2021.1.1. ~ 2021.12.31. 종료과정

- 과정적정성 심사 완화 대상 과정은 심사 기준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교·강사 부적합 등의 이력이 있는 과정은 심사 실시

□ 원격 콘텐츠 심사(스마트혼합훈련 대상)

-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의 연계성, 원격훈련 콘텐츠의 내용·화질·음질·윤리성 심사

- 2022년부터 집체-원격 연계성 심사를 강화하여, 적합 이력이 있어도 변경된 심사 기준에 따라 조건부 또는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붙임4]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스마트혼합훈련 원격훈련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 원격훈련운영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 중 별도 수정보완 기간 부여 예정

□ 성과적정성 심사(실업자 계좌제)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까지 적합(또는 조건부적합)된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 중 직종별(NCS 소분류)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훈련과정
- (심사방법) NCS소분류 기준으로 아래에 따라 구분하고 심사대상은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저성과 훈련과정 선정 제외
 - 본 공고를 통해 인증 및 과정심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과정과 훈련과정 심사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의 성과적정성 심사는 동시에 평가점수 부여 및 선정

※ [붙임6]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기준 참고

<성과적정성 심사기준(실업자 계좌제)>

구분	기준	결과
심사대상 (수료인원 5인이상)	NCS소분류 직종별 하위 30%가 되는 기준점수* 미만 과정 * 기준점수는 지표별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함	적합(미제한)
		부적합
심사제외 (수료인원 5인미만)	신청한 NCS소분류 직종의 수료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적합(5회차 제한)
	신청한 NCS소분류 직종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적합(5회차 제한)
	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 성과적정성 심사 없이 회차 제한으로 선정된 과정을 미개설 하거나 5인 이상 실시하지 않은 직종	부적합
NCS소분류 기준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 미발생(0명) 또는 취업률이 0%인 훈련과정		부적합

- (심사우대) 자영업자 특화과정, BHA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
- (산정대상) 통합심사과정*, 스마트혼합훈련과정(추가심사 포함)
 - * 「특별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보유기관 대상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가 공고(2017.12.28.)」에 따른 선정과정 포함
 - 2020년 이전 개시 과정: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2020년 이후 개시 과정: '40시간 이상 일반계좌제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
 -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무관

□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실업자 국기)

- (심사대상) 과정적정성 심사까지 적합(또는 조건부적합)된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
 - 수료인원과 관계없이 수료율 또는 취업률이 0%인 훈련과정은 부적합 판정
- (심사방법) 코로나 19 대응 심사완화 기조 유지
 - 직종별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가·감점 등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를 부여하고, 선정규모 내에서 높은 순위의 훈련과정을 우선하여 선정
 - ※ [붙임6]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기준 참고
 - 본 공고를 통해 인증 및 과정심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과정과 훈련과정 심사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의 산업·지역 인력수요심사는 동시에 평가점수 부여 및 선정
 - 지역·직종별 선정규모(인원)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
 - * 선정규모 내 1개의 기관이 독점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후순위 기관의 과정 선정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42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 공고(2021.10.25.)따라 통합·분리된 직종은 발생한 실적을 통합하여 산정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기준(실업자 국기)>

선정비율	대상	점수 산정 방법
90%	운영실적이 있는 훈련과정	취업률(40점) + 고용유지기간(20점) + 가·감점 (직종별 평균취업률의 70%미만인 경우 제외)
10%	90% 미선정 과정 또는 실적없음 (직종별 수료인원 5인 미만 포함)	성과창출가능성(20점) + 가·감점

- (심사우대) 우수훈련기관의 그린뉴딜, 소재·부품·장비 뿌리 및 조선업 관련 직종, BHA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심사 완화*(단, 저성과 과정은 제외)
 - *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를 통해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선정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운영인원 추가 배정
- (산정대상) 통합심사과정*, 스마트융합훈련과정(추가심사 포함)
 - * 「특별인증평가 '1년 인증' 등급보유기관 대상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가 공고(2017.12.28.)」에 따른 선정과정 포함
- (추가선정) 다음의 경우에는 과정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 과정을 추가* 또는 초과선정 할 수 있음
 - ※ 2023년도 운영 권역·직종별 훈련물량(훈련인원)은 2022년 별도 안내 예정

- ① 특정 권역·직종의 선정물량이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신청이 있으면, 해당 직종의 타 지역 훈련과정 선정현황 및 추가적인 인력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② 특정 직종의 선정물량이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신청이 있고, 해당 직종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정
- ③ 경제상황, 지역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특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역, 직종별 선정물량을 초과하여 선정 가능

- (기타사항) 선정된 훈련과정은 직종별 과정의 정원을 합산하여 '직종별 훈련가능 인원'이 부여되며, 부여된 훈련가능 인원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중장년특화 훈련: 해당 국기 직종*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중장년(만 40세 이상) 참여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중장년 훈련생은 '직종별 운영가능 훈련인원'에서 미차감
 - * 관련직종(11개): 친환경 건축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 열·냉동기계, 내선공사, 전기 시스템제어, 태양에너지, 스마트의류, 환경보건관리, 스마트팜구축, 특수용접, 건축목공
 - ※ 2022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변경직종 확인 (붙임7 참고)
-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는 '직종별 훈련가능인원'에서 미차감

③ 훈련비 심사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은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여 훈련비를 지원단가의 150%(고속련·신기술 최대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 훈련비 심사 신청 시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출한 증빙자료 등은 훈련비 정산을 위하여 보관해야 함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한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음)
 - ※ 훈련비산출내역서 작성 예시와 양식은 별도로 게시되는 첨부자료 확인
- 신청한 훈련비는 심사를 통해 항목별로 조정될 수 있음
- '고급 및 특화 훈련과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과정으로 판정하고,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 ※[붙임5]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심사 고급 및 특화과정 훈련비 심사항목 및 기준 참고

1. 성과평가

□ 실적보유기관(집체, 원격) 성과 산출

- 훈련성과를 산출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뒤 60점 만점기준으로 점수 부여

<실적보유기관(집체)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성과 평가 (60점)	(A) 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		
	- 훈련기관별 평가대상 훈련생에 대해 실업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실업자와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		
	성과평가 점수(최대 60점)		
	훈련생 유형별 평가(45점)		공통지표(15점)
	실업자 훈련생	재직자 훈련생	
	일반취업률(15점)	-	훈련이수자평가(12점)
	고용유지기간(10점)	-	개설률(3점)
	수요자만족도(10점)	수요자만족도(25점)	(가점) 스마트통합훈련 LMS 구비 및 과정 종료실적(최대 2점)
	수료율(10점)	수료율(20점)	(감점) 정부지원 LMS 사업 참여 후 스마트통합훈련 미개설(-1점)
	(가점)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수준(최대 3점)	-	-
①	②	③	
실업자지표 점수 × 실업자 실시인원 비중(%)	재직자지표 점수 ×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	공통지표 점수	
점수부여 : (① + ②, 45점 만점) + ③(15점 만점) 점수 합산			
(B) 훈련생 통합평가 방식			
- 훈련기관의 실업자와 재직자 실시인원 비중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성과평가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			
* 일반취업률 및 고용유지기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5점)·훈련이수자평가(12점)·개설률(3점) 지표 별도 배점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성과 평가 (60점)	일반취업률	15점	
	고용유지기간	1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수료율	10점	
	훈련이수자평가	12점	
	개설률	3점	
	가점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임금수준, 스마트통합훈련 LMS 구비 및 과정 종료실적)	최대 5점	
감점 (정부지원 LMS 임대지원사업 참여 후 스마트통합훈련과정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	-1점		
※ (A)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과 (B)훈련생 통합평가 방식으로 각각 점수를 산출한 뒤 훈련기관별 유리한 점수 부여			
※ 2023년도 심사평가부터는 (A) 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방식만 적용 예정			

<실적보유기관(원격)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성과 평가 (60점)	실업자 훈련기관	일반취업률	15점
		고용유지기간	1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중도탈락률	10점
		과정운영실적	5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혼합훈련 개발·운영 또는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최대 5점
	재직자 훈련기관	수료율	20점
		수요자 만족도	20점
		훈련과정 등급	10점
		과정심사 적합률	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가점(스마트훈련, NCS 적용 과정 개발·운영 비율, 혼합훈련 개발·운영 또는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최대 5점

□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 보유기관 모니터링 평가

- 다년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 평가 실시
 - * 2021년도 훈련과정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건전성 평가만 진행(훈련 성과평가 미적용)
- 훈련성과 모니터링 항목 및 배점은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 지표와 동일

2. 현장평가

□ 신규직종 포함 최대 3개 직종 현장검증

- 기관경영, 훈련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관리 등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별 역량을 평가하여 실적 보유기관 40점 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
-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 현장평가 시간 및 평가위원 구성 >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 ~ 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현장평가 시 검토하는 직종, 평가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신규·실적보유기관 현장평가 항목(집체, 원격)>

평가항목	배점	
	신규기관(100점)	실적기관(40점)
기관경영	25점	6점
훈련과정 관리	20점	8점
(집체)훈련시설·장비, (원격)훈련인프라	20점	10점
훈련전담인력	20점	10점
훈련생 관리	15점	6점

- ※ [붙임1]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기준 참고
- [붙임2]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증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기준 참고
-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현장평가 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해당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유예 부여 (평가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V. 결과발표

1 인증평가 결과

1. 인증등급 부여

□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 성과평가, 현장평가 영역의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3년인증, 인증유예로 평가결과 판정
-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이상 득점을 비롯한 우수 선정요건 충족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유효기간 기본 3년 외에 추가 2년 부여, 총 인증기간 5년)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평가 결과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및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우수훈련기관 (5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우수훈련기관은 BHA(베스트직업훈련기관) 공모 신청 가능(해당 공고 참조)

□신규기관 인증평가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평가결과 판정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평가 결과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 (실적·신규기관 공통) 최종 결과발표일 이후라도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확인(또는 발생) 시 인증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평가

○ 기관건전성평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로 조정, 성과평가 배점(60점)의 40%(24점)미만 획득 시 '조건부인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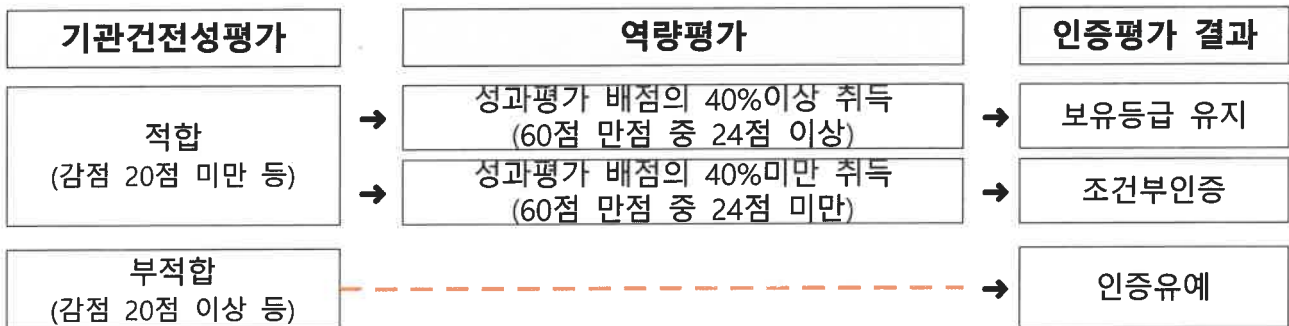
※ 조건부인증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부터는 조건부인증은 폐지하며 성과평가 총점의 40% 미만 시 인증유예

- 2021년 조건부인증 획득기관이 2022년도 평가에서도 조건부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도 평가 결과는 인증유예 부여

○ '조건부인증'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 수 및 물량 배정 등에서 차등 제한 적용

* 훈련과정 심사 시 신규기관에 준하는 패널티 적용(원격훈련과정 또는 타훈련사업의 경우 해당 공고문에 따름)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



2. 인증등급 유효기간

□ 실적보유기관

<실적보유기관 유효기간>

인증등급	유효기간 부여
우수훈련기관 (5년인증)	○ 유효기간 최초 시작일*로부터 5년(기본 3년 + 추가 2년) * 2022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기관 : 2023.1.1.부터
3년인증	○ 유효기간 최초 시작일*로부터 3년 * 2022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기관 : 2023.1.1.부터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은 현장평가 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함
-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 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함
-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신규기관

<신규기관 유효기간>

인증등급	유효기간
1년인증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평가 대상

<모니터링 평가대상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보유등급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조건부 인증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인증유예	○ 2023.1.1.부터 2023.12.31.까지

-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3.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우수훈련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선정

□ 선정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75% 이상 획득

※ 당해 연도 인증평가 기준 및 결과 적용,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현장평가 참여 必

- ② 기관건전성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 ③ 2020.1.1.~우수훈련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물의 등 발생 이력이 없는 기관
- ④ 2019~2021년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이력이 없는 기관
- ⑤ 인증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
 - ※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 등으로 인해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유효기간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실적보유기관 기본 유효기간(3년)에 추가로 2년 부여(최대 5년)

우수훈련기관 취소

□ 취소 요건

-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선정 취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나 인증유예로 조정
 - ①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 처분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 등급 혜택 배제
 - ② 매년 실시한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된 경우
 - ※ 20점 이상 감점된 경우 우수훈련기관 취소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 ③ 직전 1년(인증평가 대상 기간) 간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수렴 결과,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 단,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 ⑤ 매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시기별 우수훈련기관 취소 요건 >

선정시기	취소 요건
~2018년 선정 우수훈련기관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전체평균의 80% 미만인 경우
2019년~2021년 선정 우수훈련기관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전체 평균의 90%미만인 경우

- ※ 성과평가 배점(60점 만점)의 40%인 24점 미만 획득 시에는 우수훈련기관 취소와 함께 조건부인증 부여(2023년도부터는 인증유예 부여 예정)
- ※ 일반취업률은 가중치를 미반영한 훈련기관의 성과(훈련직종별 취업률 산정이 아닌 통합 취업률 적용)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직자 훈련만 운영한 훈련기관은 일반취업률을 제외하고 산정
- ※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결과 모니터링은 훈련생 통합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
- ※ 우수훈련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시 훈련기관별 성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기준은 매년 공고되는 심사평가 계획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취소 시점

- 우수훈련기관 취소 여부는 매년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에 판정
 - 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기관 혜택 배제
- * 선정 취소요건에 해당하나 행정소송·심판 및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인해 해당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점에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보류되는 경우, 관련 행정소송·심판 종결(훈련기관 패소) 및 집행정지 실효 시 즉시 우수훈련기관 취소 적용
- 우수훈련기관은 취소되었으나 실적보유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인증 부여(차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우대혜택 배제

-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과정심사 등 우대혜택 배제, 우수훈련기관 인증마크 사용 불가
-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우대혜택으로 적용되는 훈련과정 유효기간도 조정

2

과정심사 결과

1. 과정 적합 여부 판정

□ 과정심사 결과 : 적합(조건부 적합), 부적합

- 조건부 적합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조건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신청하여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야만 훈련실시 가능

<조건부적합 항목별 상세 설명 >

구분	상세 설명
훈련방법 조건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추가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훈련 교·강사 조건부	등록한 훈련 교·강사의 추가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훈련시설 조건부	등록한 훈련시설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훈련장비 조건부	등록한 훈련장비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훈련교재 조건부	등록한 훈련교재의 추가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직종 조건부	신청한 NCS직종이 심사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스마트융합훈련) 원격훈련 조건부	원격훈련 운영 계획의 수정·보완 또는 자체조달콘텐츠 최종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조건부 심사 시 수정·보완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부적합 판정

2. 훈련과정 유효기간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부여
 - 단, BHA 및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음

VI. 유의사항

1. 훈련기관 사전관리 안내

□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검토

- 부정·부실 훈련기관 재진입 방지 및 훈련기관 정보 관리를 위해 신규 기관 진입 시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 검토 실시 중
 - 행정처분 및 인증유예 이력 등 데이터*를 검증하여 기존 훈련기관 동일기관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기존 관리번호를 사용하도록 처리
- * 훈련기관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 ※ 훈련기관 정보 변경(기관유형, 대표자, 소재지 등) 시에도 사전검토 후 변경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 실시가능직종은 정기신청을 마련하여 운영 중*(신청기간 별도 안내 예정)
 - * 신규 및 특화사업 등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두어 운영할 예정
 - 인증평가 결과 '1년 인증' 이상 등급을 보유하더라도 실시가능직종 미승인 시 해당 직종의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
 - * 실시가능직종 신청기한 내 신청 후 직종 처리상태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HRD-Net)
 - 실시가능직종 시설·장비 확인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가능직종 삭제 필요, 향후 발견 시 선정 취소·제외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학과(전공),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폐강 및 변경되어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 삭제
-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음

2. 인증평가

□ 평가 대상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은 인증평가 대상 훈련사업의 종료실적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인증평가 대상기관(다년인증기관 모니터링 대상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인증유예 부여
- 본사,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훈련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신청 필수
- 인증평가 진행 중, 평가결과 발표 이후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훈련성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등급 취소 및 인증유예 부여
- * 타 훈련기관의 정보를 임의도용하거나 시설장비가 인가된 것과 다를 경우 등
- 인증평가 실시 연도에 폐업, 향후 훈련미실시 등이 예상될 경우 사전 평가포기 신청 요망

□ 기관건전성 평가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반영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 '본안') 제기 시,

- ①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
→ 본안 진행 중이라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
- ②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본안청구 인용 여부와 무관)
→ 집행정지의 실효일을 기준으로 인증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평가에 반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모두 '집행정지'로 기재
*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모두를 '집행정지의 실효'로 기재

- 재정건전성평가 증빙자료의 발급처 직인이 없거나 테스트 페이지 제출 등 공신력이 없는 서류 제출 시 해당 항목 감점

□ 성과평가

- 2개 이상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1개로 통합한 기관은 통합 전 관리번호별 훈련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실시
- 성과평가 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6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성과를 100% 달성*했으나, 등급별 배점 기준의 달성비율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예) 수료율 100%(훈련생 전원 수료), 취업률 100% 등

- 성과 산출 대상이 되는 훈련생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 훈련생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다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자는 취업자로 불인정
-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훈련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이 어려운 인원*은 훈련기관의 평가대상 구분 및 성과평가 시 대상에서 제외(2022년 7월말 기준 반영)

* (전문)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 이상 질병·부상자, 임산부, 맞춤형기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유형을 파악 후 훈련생별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HRD-Net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완료 필요(지방고용노동관서에 승인된 사항만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현장평가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 현장평가일은 각 기관별로 개별 안내.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으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현장평가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심사평가원으로 즉시 통보 후 평가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현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현장평가의 질 관리 또는 평가 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기관의 증빙자료 촬영 등으로 수집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은 훈련기관 인증 평가 체계 점검 및 현장평가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현장평가 참여 가능
- 현장평가 장소는 반드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기관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인증유예 등 불이익 부여 가능
- 훈련운영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처분 발생 시 해당내역 평가에 반영(2022년 평가결과 발표 전까지 발생한 내역 확인)

□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부여

- 2023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중 2022년 인증 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 신규 우수훈련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참여 필수
 - 2022년의 기관건전성, 역량평가(성과 및 현장평가) 점수를 토대로 결과 발표일에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새로 부여(기존 등급 및 유효기간 등 종료)
 - 기존 우수훈련기관이라도 현장평가 참여 시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발표일에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이 신규 부여되며, 기존 우수훈련기관 지위 및 우대혜택은 종료

※ 2023.1.1.부터 신규 획득 등급에 대한 효력 발생, 기존 등급 및 유효기간은 2022.12.31.부로 종료

3. 과정심사

선정제외 · 인정취소사유

- 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해당 과정 및 직종(NCS세분류)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산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행정처분 내역이 있을 시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선정 제외 가능
- 유효한 인증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증등급이 취소된 경우
 - 유효한 인증등급, 인증등급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적용*기준은 2022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최종 결과(신규기관, 실적보유기관)를 기준으로 함
 - *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등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등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촉계약을 하지 않은 훈련교·강사의 개인정보(HRD-Net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무단 활용*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훈련 과정을 선정 제외 또는 인정 취소할 수 있음
 -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스마트통합훈련의 경우, '2021년 민간 LMS 지원 대상 선정(2020년 선정 후 계약 연장 기관 포함)'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기관은 선정 제외
-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과정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신청(훈련과정 심사 단계)

- 훈련과정 교과목별 최대 3명까지 'NCS확인강사*'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 * 훈련교·강사는 자격, 경력 등을 HRD-Net(hrd.go.kr)에 등록 → 심사평가원 승인(40점 이상) 및 NCS 확인강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 강사 신청의 구체적인 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공지사항> 훈련과정심사> [공지] (훈련강사용) NCS확인강사 신청매뉴얼(2021.10.05.) 참고
- 과정심사 시 교과목별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여부를 심사

□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참고: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적용]

- 2023년 훈련과정 신청 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교·강사는 입력 불가
-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함. 따라서 교·강사가 2023년 중 훈련에 참여하여 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202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2022년 적용
2022년 내 보수교육 이수자	2023년에 훈련에 참여하여 강의할 수 있음(변경심사 포함)

* 보수교육 이수시간 : 모든 훈련교·강사는 기초교육 2시간 이상 / 연간 15일 및 140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교·강사는 기본교육 12시간 이상

□ 훈련교·강사 변경(훈련과정 운영 단계)

- 훈련과정적정성 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교·강사(교과목별 최대 3명) 내에서만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과정적정성 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된 훈련교·강사(교과목별 최대 3명)를 다른 훈련교·강사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유사한 수준*의 훈련교·강사로 변경신청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의 변경인정을 받아야 함
 - * ① 기존 교·강사 점수가 55점 미만인 경우, 변경예정인 교·강사 점수는 해당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② 변경예정 교·강사 점수가 55점 이상인 경우, 기존 교·강사 점수와 관계없이 변경 인정
 - 단, 아래의 경우 변경신청 및 변경인정 절차를 거치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추가 심사* 실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1조 참조)
 - * 추가심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평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① 실업자국기 훈련과정을 최초로 운영(HRD-Net 실시신고)하기 전 훈련교·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② 실업자국기 훈련과정의 훈련교·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본인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변경신고함으로써 NCS확인강사가 아닌 자도 임시(월력상 15일 이내) 훈련교·강사로 활용 가능
- 훈련교·강사 변경이 빈번한 기관은 차기 과정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훈련 직종

- 훈련과정 신청시 반드시 신청한 훈련과정에 가장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분류코드 기재
 - 해당 분류코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직종분류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훈련기관이 변경된 NCS 분류코드에 따른 실시가능직종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직종조건부적합' 판정

훈련과정 편성

□ 실업자 국기

-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은 반드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정의를 확인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편성가이드'를 참조하여 과정 편성
 - 훈련내용이 실업자 국기 직종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시 '부적합' 판정
- 실업자 국기는 직종별 기준훈련시간 내에서 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기준훈련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 ※ 기준훈련시간 내 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교과목별 훈련시간은 자율 편성, 국기직종·NCS 세분류·자격증별 기준훈련시간은 2022년 별도 안내 예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 81개 직종으로 변경되므로 별도 안내되는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실업자 계좌제

- 실업자 계좌제는 직종(NCS 세분류) 또는 자격별로 기준 훈련시간 내에서 과정 편성
 - ※ NCS 세분류·자격증별 기준훈련시간은 2022년 별도 안내 예정
 - 초과편성 시 해당 사유, 교과목별 시간의 적정 여부를 심사
 - ※ 훈련기준상 권장훈련시간 초과 편성, 유사교과(능력단위) 중복 편성, 직무능력습득과 관련성이 낮은 교과 편성 등을 중점 심사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유이숲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반드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과정 편성

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 과정평가형 자격(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과정)

- 아래 실업자 국기 훈련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실업자 국기 직종 정의 및 편성 가이드 등에 따라 심사
 -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적정성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 심사
 - ※ 국기 신청한도, 성과심사 실적 포함
- 2021년, 2022년 운영 통합심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통해 승인받은

국가-과정평가형 연계 과정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한도 및 성과적정성, 산업·지역 인력수요심사 훈련성과 산정 시 반영 (과정평가형 특화심사를 통해 선정한 과정 제외)

- 단, 훈련역량평가 실적 산정 시에는 포함

<과정평가형자격(실업자 국기직종 연계) 현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실업자 국기직종	비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국기 직종명 변경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	국기 직종명 변경
전자출판기능사	출판	
웹디자인기능사	디지털디자인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제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설계제작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국기 직종명 변경

※ 관련 제도, 편성기준 등 상세사항은 과정평가형자격 홈페이지(c.q-net.or.kr)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에 문의

4. 기타

-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므로, 입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신청 당시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비 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선정 가능(조건부적합 판정)
 - 단, 훈련실시 이전에 구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인정
- 지역 및 직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정 신청*
 - * 적합률·모집률·개설률 등에 관한 심사지표 도입·변경을 통해 실적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훈련과정 실시신고 시 전자시간표(날짜, 시간, 교과목<능력단위>, 훈련강사 등) 활용
- 법 시행령 개정(2021.9.29.)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 및 사업주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시간 완화
- 별도 세부사항 및 공고 관련 사항은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자료집 설명으로 같음

VII. 향후 일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일정

◇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심사평가 결과발표(10월중)와, 이의 신청결과발표(11월말) 절차로만 진행됨 (※ 최종 평가결과 확정절차 없음)

○ 결과 발표일 : 2022.10.21(금), (이의 결과 발표일: 2022.11.30(수))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심사평가 계획 공고	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선정계획 공고 (기준, 절차, 방법 등)	21.11.30.
2. 권역별 훈련기관 의견수렴	권역별 훈련기관 오프라인 의견수렴제도설명 및 온라인 송출	21.12월
3. 추가 안내 및 권역별 설명회	주요 FAQ 등 의견수렴 반영 심사평가 추가안내 권역별 오프라인 훈련기관 대상 설명회	22.3월중
4. HRD-Net 심사시스템 사전 오픈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심사평가(인증과정 일원화 신청 화면 임시저장가능) 시범사용	22.3월~
5. 심사평가 신청 접수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접수 (인증평가, 과정심사 신청, 단 원격훈련과정은 별도 심사일정에 따라 접수)	22.5.2~5.11
6. 기본평가 (기관건전성)	준법성, 재정건전성 평가	22.5.12~6.1
7. 정정기간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신용등 급이 원클릭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 는 훈련기관은 정정보안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등 보완 훈련교재 사설·장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강사 신청 정보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정정 가능	22.6.2.~6.7
8. 현장평가 실시	훈련기관별 현장평가 (기관 및 운영자료 검토, 시설장비 점검, 기관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	22.6월~9월
9. 심사평가 결과 발표	인증 및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22.10.21
10. 이의신청 접수	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22.10.24~10.27
11. 이의신청 심의	이의신청 심의	22.10.30~11.29
12. 이의신청결과 발표	이의신청 결과 발표	22.11.30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수시 및 특화심사 일정

□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연 2회

구분		선정계획 공고	선정결과 발표
K-디지털트레이닝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22년 상반기	21년 11월 18일	(K-디지털플랫폼) 22년 1월초 (기 선정기관) 22년 2월중 (신규신청기관) 22년 4월중
	22년 하반기	22년 5월	22년 8월

*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연 1회 실시

구분	선정계획 공고	선정결과 발표
기업맞춤형 훈련	22년 4월	22년 8월

*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일반고 특화과정 및 과정평가형 훈련 등 별도 수시 심사

○ 일반고, 과정평가형 등 심사계획을 수립 진행

구분	선정계획 공고	선정결과 발표
23년 운영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22년 9월	22년 11월
23년 운영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22년 8월	22년 11월
23년 운영 중앙부처국기 훈련과정	22년 10월	22년 12월

*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주 위탁(집체) 훈련 수시 심사

○ 개별기업 훈련수요에 맞춤화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에 한하여 별도 수시심사 진행

- 해당기업 외 다른 위탁기업 훈련은 불가하며, 심사 시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 기업과 위탁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문의처 안내

문의사항	문의처
<p>HRD-Net (심사평가시스템)관련 문의</p>	<p>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p>
<p>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문의</p>	<p>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인증평가센터, 훈련과정심사센터 Q&A 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or Q&A</p>

□ 실적보유기관(집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금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가소이건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지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100점)	성과평가 (60점)	<p>○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사업주훈련제외)</p> <p>- 산출식: (6개월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을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중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p>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기관 취업자수</th> <th style="padding: 5px;">200명 미만</th> <th style="padding: 5px;">200명~ 400명미만</th> <th style="padding: 5px;">400명~ 600명미만</th> <th style="padding: 5px;">600명~ 800명미만</th> <th style="padding: 5px;">800명~ 1,000명미 만</th> <th style="padding: 5px;">1,00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h style="padding: 5px;">가중치</th> <td style="padding: 5px;">1</td> <td style="padding: 5px;">1.1</td> <td style="padding: 5px;">1.2</td> <td style="padding: 5px;">1.3</td> <td style="padding: 5px;">1.4</td> <td style="padding: 5px;">1.5</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고용유지기간 등 타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p> </div> <p>※ 훈련직종별(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p>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p>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미만	400명~ 600명미만	600명~ 800명미만	800명~ 1,000명미 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미만	400명~ 600명미만	600명~ 800명미만	800명~ 1,000명미 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고용유지기간 (10점)	<p>○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100%)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1.6.30.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사업주훈련제외)</p> <p>-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p> <p>○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당기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p> <p>○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p>수요자만족도 (10점)</p>	<p>○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내일배움카드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과정 참여인원의 응답점수를 응답자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훈련별 훈련과정 참여자 응답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산출 후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주위탁훈련의 수료인원의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사업주위탁훈련은 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5점으로 환산 <p>○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p>																	
	<p>수료율 (10점)</p>	<p>○ 평균 훈련시간에 따른 그룹별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 [(해당 기관 수료율÷그룹별 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 실업자훈련생 중 조기취업자 인원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p>○ 훈련기관별 평균 훈련시간 기준(인증평가 대상 훈련과정의 평균훈련시간(운영회차의 훈련시간 합산)으로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 ~ 140시간 미만 ③ 140시간 이상 ~ 500시간 미만 ④ 50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평균 수료율을 적용하여 등급 산정 																	
	<p>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12점)</p>	<p>○ 2021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과정(제1차~11차) 및 추가 평가 실시 과정의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 산출</p> <table border="1" data-bbox="638 1489 1436 169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h>미실사평가포기행정처분</th> </tr> </thead> <tbody> <tr> <td>집체훈련</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d>0점</td> </tr> <tr> <td>스마트 혼합훈련</td> <td>12점</td> <td>10.5점</td> <td>7.5점</td> <td>한정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td> <td>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집체훈련과정 기준): [(A등급 과정수×12) + (B등급 과정수×9) + (C등급 과정수×6) + (D등급 과정수×3) + (미실사평가포기행정처분 과정수×0)] ÷ (2021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 + 추가신청 등 2021년 훈련이수자 평가 과정 전체) <p>○ 대표과정 외 추가신청 과정, 과정평가형과정, 스마트혼합훈련과정 등 포함</p> <p>○ 이수자평가 대상이 없는 기관은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이수자평가 대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자평가에 미참여할 경우 해당과정은 0점 처리 (이수자평가 시 동일과정 판단은 '훈련과정코드' 기준)</p>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사평가포기행정처분	집체훈련	12점	9점	6점	3점	0점	스마트 혼합훈련	12점	10.5점	7.5점	한정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실사평가포기행정처분														
집체훈련	12점	9점	6점	3점	0점														
스마트 혼합훈련	12점	10.5점	7.5점	한정평가 45점 서면평가: 3점	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소분류 기준 동일 소분류 내 비NCS 과정만 운영하고 해당 과정의 이수자평가 결과(이수자 현장평가를 실시한 과정만 해당)가 훈련기관 전체 평균 미만일 경우 평균값 부여(※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부터 미적용) 								
	개설률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신청일 기준 2020.1.1.~2020.12.31. 승인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산출식: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 통합심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과정 등 인증평가 과정 전체대상(반납 신청한 훈련과정 및 유효기간연장심사로 승인된 훈련과정 포함) ○ 유효기간 연장심사 과정은 유효기간연장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개설실적 반영 ○ 산정대상기간 내 승인과정이 없는 등 개설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 점수 부여 ○ 훈련과정코드 기준 동일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 								
	가점 (최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생 중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근로복지공단 산정 월평균 보수액 기준)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고용보험가입 취업자 평균임금 ○ 스마트혼합훈련 LMS 구비 및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종료 실적(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혼합훈련 LMS 구비(1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가점 1점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가점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민간 LMS</td> <td>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td> </tr> <tr> <td>STEP 온라인강의실</td> <td>2021.1.1.~12.31.까지 STEP 온라인 강의실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td> </tr> <tr> <td>자체 LMS</td> <td>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종료실적(1점) : 2021.1.1.~2021.12.31. 기간 내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종료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부여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에 한하여 가점 부여(기존 승인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점 기준	민간 LMS	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STEP 온라인강의실	2021.1.1.~12.31.까지 STEP 온라인 강의실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자체 LMS	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구분	가점 기준									
민간 LMS	202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2022.7.31.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STEP 온라인강의실	2021.1.1.~12.31.까지 STEP 온라인 강의실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자체 LMS	2021.1.1.~12.31.까지 자체 LMS 활용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을 승인받거나 실시한 기관									
	감점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 정부지원 LMS 사업(민간 LMS 임대, STEP LMS분양) 참여 후 산정시점(2022.7.31.)까지 스마트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S 분양 후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스마트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현장평가 (40점)		감점 대상에 해당 ※ 민간 LMS 임대사업과 STEP LMS 분야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 LMS에서 스마트혼합 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함 ※ 훈련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기관경영 (6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8점)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직업능력심사 평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 등) 수상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 ※ 비대면(온라인)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확인 시 우대 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시설 및 장비 (10점)	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기관의 시설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②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기관의 장비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③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발생 내역 확인 후 반영
	훈련전담인력 (1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스타훈련교사' 양성 실적을 보유한 경우 우대 ④ 훈련전담인력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가? ⑤ 훈련전담인력은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훈련생 관리 (6점)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집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가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혼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혼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현장평가) (100점)	기관경영 (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설 및 장비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 기관의 시설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 기관의 장비 관련 처분 이력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④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 ※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발생 내역 확인 후 반영
	훈련전담인력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교강사를 확보하고 있는가? ※ 훈련교강사 중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자가 과반일 경우 우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행정인력 중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자가 과반일 경우 우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육 참여 인원이 과반일 경우 우대
	훈련생 관리 (15점)	①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지식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실적보유기관(원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금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야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가소이건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미감일 기준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법인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2">개인사업자</td> <td>○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미감일 기준 적용)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사업자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미감일 기준 적용)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원천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사업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 평가 (100점)	성취평가 (60점)	훈련별 지표 (40점)	실업자	<p>○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을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p> <p>- 산출식: (6개월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p> <p style="text-align: center;"><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p> <p>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p> <p>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중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 (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p> <p>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 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관 취업자 수</td> <td>200명 미만</td> <td>200명~ 400명 미만</td> <td>400명~ 600명 미만</td> <td>600명~ 800명 미만</td> <td>800명~ 1,000명 미만</td> <td>1,000명 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r> </table> <p>※ 고용유지기간 등 타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p> <p>※ 훈련직종별 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률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p> <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 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p> <p>○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p>	기관 취업자 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 미만	400명~ 600명 미만	600명~ 800명 미만	800명~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기관 취업자 수	200명 미만	200명~ 400명 미만	400명~ 600명 미만	600명~ 800명 미만	800명~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고용유지 기간 (10점)	<p>○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100%)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180일 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p> <p>-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1.6.30.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p> <p>-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p> <p>○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당기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p>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 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 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수요자 만족도 (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 후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중도 탈락률 (10점)	○ 중도탈락률 21% 미만일 경우 만점(10점) 부여, 1%p 증가(21%부터) 시마다 0.5점씩 감점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산출식: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과정운영 실적 (5점)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산출식: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과정심사 적합률 (5점)	○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산정기간: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산출식: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 × 100%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 × 100%
	가점 (최대 5점)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3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생 중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근로복지공단 산정 월평균 보수액 기준)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고용 보험가입 취업자 평균임금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종료 기준이 있는 경우)(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 - 운영실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콘텐츠 탑재일이 2021.1.1.~2021.12.31. 내 해당하며, 탑재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훈련과정 - 8차시 이상의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심사발급코드 有)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2점 부여 - 그 외 8차시 이상 콘텐츠(심사발급코드 無)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1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마켓 내 8차시 이상 탑재되어 있어야 가점 대상 과정으로 인정 가능 -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가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가점과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가점의 합산 점수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재 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산출식: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수료생 입력 수강평 및 심사평가원 설문조사데이터 ○ 근로자 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점) + (B등급 과정수×7점) + (C등급 과정수×4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간: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산출식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산정대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가점 (최대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종료 기준) 실적이 있는 경우(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1점):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 - 운영실적(1점):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NCS훈련 개발·운영(종료 기준)실적 비율(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훈련 개발실적(% 최대 0.5점): (NCS 적용과정수 ÷ 2021년도 승인된 과정수) × 100% - NCS 훈련 운영실적(% 최대 0.5점): (NCS 적용과정수 ÷ 2021년도 운영한 과정수) × 100% ○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종료 기준)이 있는 경우(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 - 운영실적: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1.12.31. 훈련과정 ○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대상: 콘텐츠 탑재일이 2021.1.1.~2021.12.31. 내 해당하며, 탑재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훈련과정 - 8차시 이상의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심사발급코드 有)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2점 부여 - 그 외 8차시 이상 콘텐츠심사발급코드 無) 탑재 및 유지 시, 과정 당 0.1점 부여 ※ STEP 마켓 내 8차시 이상 탑재되어 있어야 가점 대상 과정으로 인정 가능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p>-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및 유지 실적 가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p> <p>※ 혼합훈련(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가점과 STEP 마켓 콘텐츠 탑재 가점의 합산 점수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p>
현장평가 (40점)	기관경영 (6점)			<p>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p> <p>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p> <p>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p>
	훈련과정 관리 (8점)			<p>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원격훈련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우대</p> <p>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p> <p>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p>
	훈련인프라 (10점)			<p>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p> <p>②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p> <p>③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p>
	훈련전담인력 (10점)			<p>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p> <p>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p> <p>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p>
	훈련생 관리 (6점)			<p>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p> <p>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p>

□ 신규기관(원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이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기관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 (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td> </tr> <tr> <td>개인 사업자</td> <td>○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td> </tr> </tbody> </table>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100점)	기관경영 (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훈련인프라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
	훈련생 관리 (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심사항목	심사기준	최종결과
① 훈련 내용	훈련과정명, 훈련목표와 훈련대상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123개)으로 신청한 과정이 직종정의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미흡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훈련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주제별) 훈련시간 산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미흡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교과목에 적절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② 훈련 방법	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훈련목표 성취 및 내용 습득을 위해 적정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③ 훈련 교·강사	훈련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소요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 으로 판정)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④ 훈련 시설	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훈련시설을 구비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⑤ 훈련 장비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사양(내구연도 등)이 적정한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평가점수	<input type="radio"/> A(매우 우수) <input type="radio"/> B(우수) <input type="radio"/> C(보통)

※ 조건부 판정되면 평가점수는 '0점' 처리, 조건부항목: 훈련방법,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보수교육 관련), 훈련교재

□ 원격훈련 기본요건

심사 항목	심사기준	최종결과																										
① 시간 및 편성 비율	시간 및 편성 비율이 적정한가?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재직자 계좌제는 40시간 이상) • 전체 훈련시간의 10%이상 ~ 50% 이하(최소 20시간) 원격보조훈련과 쌍방향훈련으로 편성 • 원격보조훈련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10%이상(최소 20시간)으로 구성 • 원격보조훈련에 전공교과 포함 편성	○적합 ○조건부																										
② LMS 및 콘텐츠 확보	원격훈련 과정운영을 위해 LMS(STEP 온라인강의실, 자체 LMS) 및 콘텐츠(자체, 조달)를 확보 하였는가?	○적합 ○조건부																										
③ 교육 이수 여부	2022년 스마트혼합훈련 참여 교·강사 중 최소 1명 이상이 다음의 스마트혼합훈련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교·강사 중 교육 이수자가 없는 경우, 11월 중 별도 개설되는 '혼합훈련 기획과 교수설계' 과정을 1명 이상 수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육 일정은 해당 기관에 한해 심사평가원에서 별도 안내 실시 예정 <table border="1" data-bbox="311 1227 1179 1848"> <thead> <tr> <th>연번</th> <th>과정명</th> </tr> </thead> <tbody> <tr><td>1</td><td>혼합훈련 기획과 교수설계</td></tr> <tr><td>2</td><td>혼합훈련 설계와 운영</td></tr> <tr><td>3</td><td>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및 성과관리</td></tr> <tr><td>4</td><td>언택트 시대의 Flipped Learning 교수설계 및 수업전략</td></tr> <tr><td>5</td><td>사례 기반 비대면(혼합) 훈련 운영 역량 강화</td></tr> <tr><td>6</td><td>팬데믹과 영상의 시대, 손쉽게 만드는 영상콘텐츠</td></tr> <tr><td>7</td><td>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수법</td></tr> <tr><td>8</td><td>Zoom 활용 쌍방향 퍼실리테이팅 강의 기법</td></tr> <tr><td>9</td><td>효과적인 동영상 수업설계와 실행</td></tr> <tr><td>10</td><td>촬영부터 편집까지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기법</td></tr> <tr><td>11</td><td>1Day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만들기</td></tr> <tr><td>12</td><td>비대면 콘텐츠개발을 위한 스토리보드 설계</td></tr> </tbody> </table>	연번	과정명	1	혼합훈련 기획과 교수설계	2	혼합훈련 설계와 운영	3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및 성과관리	4	언택트 시대의 Flipped Learning 교수설계 및 수업전략	5	사례 기반 비대면(혼합) 훈련 운영 역량 강화	6	팬데믹과 영상의 시대, 손쉽게 만드는 영상콘텐츠	7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수법	8	Zoom 활용 쌍방향 퍼실리테이팅 강의 기법	9	효과적인 동영상 수업설계와 실행	10	촬영부터 편집까지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기법	11	1Day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만들기	12	비대면 콘텐츠개발을 위한 스토리보드 설계	○적합 ○조건부
연번	과정명																											
1	혼합훈련 기획과 교수설계																											
2	혼합훈련 설계와 운영																											
3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및 성과관리																											
4	언택트 시대의 Flipped Learning 교수설계 및 수업전략																											
5	사례 기반 비대면(혼합) 훈련 운영 역량 강화																											
6	팬데믹과 영상의 시대, 손쉽게 만드는 영상콘텐츠																											
7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수법																											
8	Zoom 활용 쌍방향 퍼실리테이팅 강의 기법																											
9	효과적인 동영상 수업설계와 실행																											
10	촬영부터 편집까지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기법																											
11	1Day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만들기																											
12	비대면 콘텐츠개발을 위한 스토리보드 설계																											
④ LMS 활용 성과	2021년에 지원받은 민간 LMS를 적정하게 활용하였는가? •민간 LMS 지원 요건 충족 여부(2021년 지원 기관)	○적합 ○부적합																										

□ 원격 내용 적정성

심사 항목	심사기준	최종결과
① 집체-원격 교과 연계성	훈련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집체훈련 교과와의 연계성이 적절한가? ※ 연계성 불일치 예시 '2022년 스마트혼합훈련 과정개발 가이드 76쪽 참조.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훈련 분량 및 재량학습 활동이 적정한가? ※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에서 '문제풀이'는 원격보조훈련 시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원격훈련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정한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② 원격 훈련	훈련내용이 산업현장의 현황과 최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훈련과정에 특정대상(인종, 성별, 문화,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화질·음질의 저하로 가독성이 낮고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자체콘텐츠 신정 과정에 한함) 자체콘텐츠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가? * NCS 학습 모듈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에서 무료로 배포한 자료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는 '자체콘텐츠'로 인정하지 않음(조달콘텐츠로만 활용 가능) *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콘텐츠는 '자체콘텐츠'로 인정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충족 <input type="radio"/> 조건부

- 아래 ①, ②번 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③훈련대상자, ④실습비 중 1개 이상 추가로 충족할 경우 고급 및 특화과정으로 인정

번호	구분	고급과정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특화과정(사업주 위탁만 가능)	
			중소기업특화 (사업주 위탁)	고숙련·신기술 분야훈련 (사업주 위탁)
① (필수)	훈련 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 산업현장실무 경력자 우대
② (필수)	훈련 내용	· 난이도가 높거나(Level 5 이상)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과정 *자격증 취득과정은 고급 및 특화과정에서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차별 또는 특화된 과정으로 판단 시 인정 가능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훈련 분야(생산관리·품질관리, 기술경영) 중 특화과정(Level 4 이상) *사업주위탁(중소기업특화)으로 훈련비 심사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HRD-Net(심사평가시스템) 등록	· (고숙련분야)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훈련 · (신기술분야)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활용, 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또는 20대 신기술분야훈련 및 SW분야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20대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 (SW분야) SW 개발 및 구축: 프론트엔드, 모바일, 백엔드/서버, 게임, 임베디드, 데스크탑 네이티브, 연구 및 알고리즘 모델링 등 * 고숙련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상 편성 * ①이론중심과정, ②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고급 자격과정인 경우, ③중소기업특화 대상분야, ④법정 직무훈련 분야 제외
③	훈련 대상 자	1) 선행학습 :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level 4 이하의 능력단위 (고숙련의 경우 5수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 등 * 신기술분야 훈련은 수준에 상관없음 2) 직무경력 :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3)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인정		* 고숙련분야 과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이상 참여 필수(과정별 20%가 아닌 전체 회차를 합한 인원의 20% 이상이면 가능)
④	실습 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성과적정성 지표별 산정기준(실업자 계좌제)

구분	심사지표	심사기준
성과 지수 (50점)	취업률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u>산정 제외</u>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u>산정 제외</u>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중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30점 만점으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취업인원)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
	고용 유지 기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평균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무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u>산정 제외</u> ○ 산정기간: 2020.7.1.~2021.6.30.(훈련종료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고용유지기간 산정 후, 고용유지기간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 ※ 규모(고용유지인원수)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
가점 (3점)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실적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의 종료 실적이 있는 직종(NCS소분류 기준) 2점 부여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개발 (1점)	○ 스마트혼합훈련 신청 과정 1점 부여 ○ 산정대상: 2023년 운영심사 신청과정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적용
감점 (1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 정부지원 LMS(민간 LMS, STEP 온라인 강의실) 사업 참여 후 실적산정시점까지 해당 LMS를 활용한 스마트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은 1점 감점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개시일 기준) ※ 2021년 정부지원 LMS를 지원받은 기관에 한함

□ 산업·지역 인력수요 지표별 산정기준(실업자 국기)

○ 운영실적 보유한 과정(선정규모 90%)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지수 (60점)	취업률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인원*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단,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인원은 수료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산정 제외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2022년 7월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산정 제외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 중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3명으로 적용(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취업률 산정 후,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 ※ 규모(취업인원)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
	고용 유지 기간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평균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식: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맞춤형기병, 사회복지요원(등록, 상담 기준), 계속 참여불가자 산정 제외 ○ 산정기간: 2020.7.1.~2021.6.30.(훈련종료일 기준) ※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고용유지기간 산정 후, 고용유지기간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 ※ 규모(고용유지인원수)가중치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한시적 적용 제외

구분	지표	산정기준
가점 (최대 10점)	우수기관 여부 (5점)	○ 우수훈련기관 3점, 최우수훈련(BHA)기관 5점부여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2점)	○ 국기편성가이드에 제시된 권장 능력단위를 총 훈련시간 중 40% 이상 편성되어 있는 경우 2점 부여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실적 (2점)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의 종료 실적이 있는 직종(NCS소분류 기준) 2점 부여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개발 (1점)	○ 스마트혼합훈련 신청 과정 1점 부여 ○ 산정대상: 2023년 운영심사 신청과정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적용
감점 (최대 11점)	행정 처분 (10점)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 산정기간: 2021.1.1.~2021.12.31.(처분일 기준)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 정부지원 LMS(민간 LMS, STEP 온라인 강의실) 사업 참여 후 실적산정시점까지 해당 LMS를 활용한 스마트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은 1점 감점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개시일 기준) ※ 2021년 정부지원 LMS를 지원받은 기관에 한함	

○ 운영실적 미보유 및 90% 미선정 과정(선정규모 10%)

구분	지표	산정기준
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훈련내용(2점)	○ 과정적정성 심사 항목별 우수성을 3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만점으로 환산 - 훈련교.강사 점수는 ① + ② + ③을 산정하여 10점으로 환산 ① 과정적정성에서 충족으로 판정된 NCS확인강사 점수 5점 ② 심사위원 정성평가 3점 ③ 충족으로 판정된 교.강사 중 해당 직종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보유비율 최대 2점
	훈련방법(2점)	
	훈련교.강사 (10점)	
	훈련시설(3점)	
	훈련장비(3점)	
가점 (최대 13점)	우수기관 여부 (5점)	○ 우수훈련기관 3점, 최우수훈련(BHA)기관 5점부여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여부(2점)	○ 국기편성가이드에 제시된 권장 능력단위를 총 훈련시간 중 40% 이상 편성되어 있는 경우 2점 부여

구분	지표	산정기준	
	관련실적 평균취업률 (3점)	○ 신청한 실업자 국기 직종으로 평균 취업률 이상 실적(실업자 국기, 계좌제)을 보유한 경우* 3점 부여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 국기 직종 또는 관련 계좌제 직종 취업률이 평균 이상일 경우 (계좌제 직종 소분류가 다수일 경우 1개 직종만 평균이상일 경우 적용)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실적 (2점)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의 종료 실적이 있는 직종(NCS소분류 기준) 2점 부여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종료일 기준)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과정만 해당하며, 기존 집체훈련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방법에 원격훈련을 적용한 경우 미해당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개발 (1점)	○ 스마트혼합훈련 신청 과정 1점 부여 ○ 산정대상: 2023년 운영심사 신청과정 ※ 스마트혼합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적용	
감점 (최대 11점)	행정 처분 (10점)	○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아래의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경우 직종과 관계 없이 각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 적용	
		시정명령	·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 감점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3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 훈련기관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5점 감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 훈련기관에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당 10점 감점	
정부지원 LMS 미개설 (1점)	○ 정부지원 LMS(민간 LMS, STEP 온라인 강의실) 사업 참여 후 실적산정시점까지 해당 LMS를 활용한 스마트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은 1점 감점 ○ 산정기간: 2021.1.1.~2021.12.31.(훈련개시일 기준) ※ 2021년 정부지원 LMS를 지원받은 기관에 한함		

대분류	기간산업직종(28개)	전략산업직종(19개)	서비스산업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서작성자 (3)
교육·자연·사회과학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1)	
섬유·의복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4)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가구·공예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구축 (2)	

붙임8

국가 중점사업 훈련직종

조선업 관련 훈련

조선 및 선박 수주 관련 직종(4개)	
플랜트 설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그린뉴딜 관련 실업자 국기

그린뉴딜 관련 직종(13개)		
기존 (8개 직종)	태양에너지	외선공사
	드론제어	자동차정비(새시, 엔진, 장치)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친환경 건축시공
	스마트팩토리 운영관리	플랜트 건설
신규 (5개 직종)	기후변화대응관리	토양지하수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소음진동관리
	스마트물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부리직종 실업자 국기

소재·부품·장비 관련 부리 직종(13개)	
레이저가공	금형
특수용접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반도체장비설비	기계설계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생산기계
LED응용	밀링(머시닝센터)
산업용로봇제어	선반(CNC선반)
자동차도장	

□ 신기술 과정

-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20대 분야	
인공지능	AR/VR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5G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O2O
지능형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

□ 지원제외

- 일반사무행정(컴퓨터 활용, 리더십, 고객만족, 영업 등)
-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제외 대상